

공 고

사단법인 제주경영자총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노동권익 보호, 근로환경 개선 등 노동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기업을 발굴·선정하여 노사상생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「2026년도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 선정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. 07. 13.

(사)제주경영자총협회
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

- 다 음 -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내용 : 2026년도 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
- 나. 주관기관 : 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
- 다. 선정규모 : 3개사 내외

2. 선정계획

가. 기본방향

- 제주지역 산업현장에 노동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기 위하여 노사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을 선정·지원

나. 신청자격

-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민간 기업(사업장)으로서,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공고일 기준 만 2년 이상 경과한 기업

다. 결격사유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
- 대기업 본사 및 직영사업장
- 사업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주관 「노동존중 문화 조성 우수기업」 선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
-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*이 있는 사업장
- * 고용보험 상실사유 23(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)
-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
-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
-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
- 사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「근로기준법」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
-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, 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
- 제주특별자치도 보조사업을 부정수급하여 제재기간 중에 있는 사업장
- 「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한 업종
- *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 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
- 기타 사치·향락적 소비 또는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환경 오염, 불법 공장 운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

3. 선정기업 지원사항

구분	지원항목	비고
인센티브	·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	12월 중 시상식
	· 2026 노동존중 문화조성 우수기업 선정 현판 수여	
	노사 소통 및 복지증진 지원 1. 개인 여가휴가비 지원 - 개인·가족여행 숙박비, 항공료, 가족문화체험비, 원데이클래스, 공연 관람 비용 등 도내외 여가휴가 활동에 대한 금액 지원 2. 그룹 힐링프로그램 지원 - 전각, 조향, 숲치유, 문화탐방 등 직원 공동 체험비 지원 3. 건강증진비 지원 - 건강검진비, 운동시설 이용료, 심리상담비 등 4. 노사 소통 프로그램 지원 - 소통 워크숍, 조직문화 프로그램, 팀빌딩 프로그램 등	기업당 최대 800만원 범위 내 복수 신청 가능. *지원항목별 1인당 최대 30만원
	· [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] 가족친화 직장교육 제공	선택사항
	· 노사상생 사업장 응원 커피차(또는 간식박스) 지원	-

- 인센티브별 세부 지원기준, 신청방법, 제출서류 등 지원 방식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.

4. 신청방법

가. 신청기간 : 2026. 07. 13.(월) ~ 08. 07.(금) 17:00

나. 접수방법

- 이메일 접수 : wannabewoo@jejunosa.or.kr

다. 문의 :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(☎064-751-2206)

5. 심사·선정기준

가. 1차 심사 :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

- * 제출자료가 미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.

나. 2차 심사 : 선정위원회 구성,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

- *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순 선정

[심사평가표]

구분	항목	심사기준		배점
				총점 100점
정량 (60점)	필수 충족 요건	· (필수 요건)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		20점
	고용안정 및 근로복지	· 정규직 비율		5점
		· 일·생활균형 제도 운영		5점
		· 노동관계교육 또는 인사노무 컨설팅 실시		5점
	노사상생 문화 조성	· 노사 소통체계 운영		5점
		· 노사협력 프로그램 운영		5점
	안전일터 조성	· 안전활동 실시		5점
·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		5점		
지역사회 기여	· 노사 공동 사회공헌 활동 추진		5점	
	정성 (40점)	노동존중 문화 우수사례	우수성	기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노동존중 사례인가?
구체성			추진배경, 추진과정, 추진내용 및 증빙이 구체적인가?	10점
성과성			노동자기업에 실질적인 개선효과와 성과가 있었는가?	10점
확장성			지속 가능한가? 다른 사업장에 확산 가능한 사례인가?	10점
※ 가점 사항		· 2026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		3점
		· 고용·노동 관련 인증기업		각 2점

6. 추진절차



* 상기 일정은 협의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
7. 신청서류 (필수 제출서류)

구분	서류명칭	부수	비고
1	신청서	1부	· 서식 [붙임1]
2	노동존중 문화 조성 체크리스트 및 증빙자료	1부	· 서식 [붙임2]
3	노동존중 문화 조성 추진실적 기술서	1부	· 서식 [붙임3]
4	개인(기업)정보수집·이용동의서	1부	· 서식 [붙임4]
5	신청 제외 요건 사항 확인서	1부	· 서식 [붙임5]
6	사업자등록증 사본	1부	
7	고용보험 가입자 명부	1부	
8	4대보험·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각 1부	

* 가점 사항 해당 시 증빙자료(각종 인증서, 지정서, 생활임금 적용 확인자료 등) 별도 파일로 제출.

8. 기타사항

가.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여야 함.

-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.
- 우수기업 선정 후 노동관계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.
- 우수기업 선정 후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거나 임금수준, 직원 복리후생제도 등의 혜택이 축소·폐지될 경우.

나. 심사에 따른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
다. 문 의 :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

(☎064-751-2206, wannabewoo@jejunosa.or.kr)